

마포구종합청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방서

I. 일반사항

■ 용역배경 및 목적

- 마포구종합청사의 소방시설 등의 작동·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보수기간 만료 전 문제점을 적출 보수·조치하여 안정적인 방화관리 업무 수행을 위함.

■ 시설개요

- 시 설 명 : 마포구종합청사
- 건축용도 : 업무시설(공공업무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)
- 소 재 지 : 마포구 난지도길30(성산동 370번지)
- 연 면 적 : 48,455㎡(대지면적 : 18,815.25㎡, 건축면적 : 8,559.77)
- 건축규모 : 지하2층, 지상12층
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

■ 점검방법(범위)

- 용역명 :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
- 점검방법 : 점검표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작동·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.
- 점검대상 : 구청사, 보건소, 구의회, 청소년수련관

■ 점검 인력 및 기간

- 주된 인력(특급)1인, 보조인력(중급)1인, 보조인력(초급)2인으로 4명 이상의 인력으로 4일 점검(시설관리사 1인 포함)

■ 점검자의 자격

- 점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여야 하며, 점검인력은 소방기본법 제42조에 의한 소방안전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8]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.
- 점검인력 4인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(서식 자유)

■ 점검내용

- 마포구종합청사 및 부속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상태를 관련법에 의해 점검.
- 점검기구: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8]의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며, 그 외 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도급자가 확보하여 점검.
-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력을 투입하고 착수계를 제출.
- 점검을 위해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 및 보안교육을 필한 후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감독자의 점검지시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**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용 주 펌프 작동 시험 등**
 - 체절운전시험 실시(압력계 확인)
 -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시험(체절압력의 90% 설정 확인)
 - 압력탱크 압력스위치 조정(RANGE점 및 DIFF점 재조정)
 - 지하1,2층 프리액션 밸브 테스트(각 1개소)

II. 특기사항

- 점검 시행 전 방재시스템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점검에 임한다.
- 점검실시 중 시설 및 기타 물건에 손상이 발생 할 경우, 도급자는 변상 조치 하여야 한다.
- 소방시설 등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, 특히 전기적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위험공정 등의 점검 시에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- 점검 중 기기의 분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위치, 밸브류의 개방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실행하여야 하며, 점검종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- 물계 및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시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·폐밸브 및 연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 한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.
- 점검 중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점검에 임한다.

■ 기타

- 지방서에 없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및 공인된 기관의 사례에 의한다.

■ 점검 후 조치

- 설비의 복원 : 점검완료 후에는 각종 설비의 스위치, 밸브류 등을 정상 상태로 복구하여 방재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점검결과 소방시설의 정비 또는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점검기구와 공구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.

■ 점검결과의 보고 등

- 점검 종료 시에는 즉시 준공계(사진첩 포함) 2부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[별지21호] 서식에 의한 소방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우리 공단 및 마포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끝.